

학회인준신청 등에 관한 세칙

제정 2022. 7.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회인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준신청 시 제출할 서류와 학술위원회의 인준추천기준에 대한 내용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학회의 인준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학회의 학문분야는 치의학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함.
2. 모든 평가는 최근 3년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3. 정기적인 학술집담회를 학회 인준신청 직전 3년 이상 해마다 계속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함.
4. 타 학회와 회원의 중복은 고려치 않으나 기간학회의 회원은 1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세부학회 또는 융합학회의 회원은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세부학회의 임원은 학회인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관련 기간학회의 회원이어야 함.
5. 학회활동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제3조(신청절차) ① 인준을 신청하는 (가칭)학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회인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 공문
3. 심사비 납부 내역서
4. 회원 명단
5. 학회활동 평가기준 증빙서류 일체(별지 제2호 서식)

②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회(이하 '학술위원회'라 한다)는 인준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신청된 (가칭)학회의 인준에 대한 의견을 기간학회들에 요청한 후, 접수된 의견서를 심사과정에 참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인준신청 서류의 미비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학회에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 조(인준신청 학회의 명칭) 인준신청 학회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전문과목 기간학회의 명칭과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간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학회활동평가기준) 제2조제4호의 학회활동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활동

가. 학술대회(제7조)

나. 소규모 학술행사(제8조)

다. 연구비 지급제도(제9조)

라. 학술상 또는 우수논문 포상제도(제10조)

마. 국제 초청강의 활동(제11조)

바. 국제 학술대회 개최(제12조)

2. 학회지 발간

가.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제14조 및 제15조)

나. 게재논문 심사제도(제16조)

다. 한국연구재단 KCI 및 SCIE급 등재(제17조)

라. 학회지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 준용(제18조)

3. 학회 운영

가. 홈페이지 운영(제20조)

나. 소식지 발간(제21조)

제 2 장 학 술 활 동

제6조(학술활동) 학술활동의 만점은 50점으로 한다.

제7조(학술대회)

① 학술대회란 회원 보수교육 규정에 의한 종합학술대회 승인기준에 준하는 규모의 학술행사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학회와 관련된 주제로 직접 주최한 학술행사
2. 해당 신청학회와 타 인준학회 또는 (가칭)학회 공동으로 개최하지 않은 학술 행사
3.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 등의 방식으로 참가자를 접수한 학술행사
4. 4인 이상의 연자
5. 총회 등 행사시간, 10분 이상 휴식하는 시간, 대학원생 또는 전공의 발표를 포함한 구연 및 포스터 발표시간을 제외한 6시간 이상의 순 강연 시간
6. 포스터 또는 구연에 대한 시상식

② (가칭)학회의 총회 행사는 학술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학술대회의 만점은 15점으로 하되, 최근 3년간 각 년도의 점수를 산정하고 그 중 최저 점수를 부여하며, 이 점수가 0점일 경우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인준불가로 조치한다.

④ 각 년도 학술대회의 평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0점: 0회의 학술대회 개최
2. 10점: 1회의 학술대회 개최
3. 15점: 2회 이상의 학술대회 개최

⑤ 학술대회의 증빙서류는 최근 3년의 학술대회 초록집 또는 강연연자와 주제 및 강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광고 포스터 및 온라인 광고화면 등으로 한다.

⑥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한국지부일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회의 학술대회 행사를 학술대회로 인정한다.

- 제8조(소규모 학술행사)** ① 소규모 학술행사란 학술대회를 제외한 행사로서, 강연·심포지엄·워크숍·패널토의 등의 형태인 집담회 또는 연수교육을 의미한다.
- ② 소규모 학술행사의 인정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며, 총회행사는 학술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소규모 학술행사의 만점은 10점으로 하되, 최근 3년간 각 년도의 점수를 산정하고 그 중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 ④ 각 년도 소규모 학술행사의 평점은 연 1회 개최시 5점을 부여하고, 1회 추가당 3점을 부여하며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 ⑤ 소규모 학술행사의 증빙서류는 광고 포스터, 행사 안내 이메일 캡처본, 강연자료, 초록집 및 행사 책자 등으로 한다.
- ⑥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한국지부의 경우, 국내 자체 행사로 개최한 소규모 학술행사만 인정한다.

제9조(연구비 지급제도) ① 연구비 지급제도의 만점은 5점으로 하되, 최근 3년내 지급내역이 1회 이상 인정되면 5점을 부여한다.

② 연구비 지급제도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금영수증, 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통장 내역 등 지급내역
2. 연구비 지급제도 규정 또는 연구비 지급제도가 명시된 회칙
3. 연구비 지급대상 심사 회의록
4. 연구계약서
5. 관련 공문
6. 연구비 지급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라는 것이 명시된 인쇄물

③ 제2항제6호의 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학술상 또는 우수논문 포상제도) ① 학술상 또는 우수논문 포상제도는 학술상, 우수논문상, 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또는 학술대회 우수구연발표상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학술상 또는 우수논문 포상제도의 만점은 5점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지급한 내역이 1회 이상 인정되면 5점을 부여한다.
- ③ 학술상 또는 우수논문 포상제도의 증빙서류는 수상자 명단, 학술상 또는 우수논문 포상제도 관련 규정, 관련 사진 및 관련 기사 등으로 한다.

제11조(국제 초청 강의 활동) ① 국제 초청 강의 활동의 만점은 10점으로 하되, 최근 3년간 각 년도의 점수를 산정하고 그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다.

- ② 국제 초청 강의 활동 점수는 제7조의 학술대회 및 제8조의 소규모 학술활동에 중복하여 인정한다.
- ③ 각 년도 국제 초청 강의 활동의 평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1. 0점: 0회의 국제 초청 강의 활동
 - 2. 5점: 1회의 국제 초청 강의 활동
 - 3. 10점: 2회 이상의 국제 초청 강의 활동
- ④ 국제 초청 강의 활동의 증빙서류는 국제 초청 강의 활동의 초록집, 광고 포스터, 초청 서신, 관련 사진 및 이메일 캡처본 등으로 한다.

제12조(국제 학술대회 개최) ① 국제 학술대회는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학술대회로서 다음 1호 또는 2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2일 이상 진행하는 행사로서,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학술대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 1.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가 5개국 이상인 경우
 - 2. 150인 이상의 외국인 회의 참가자
- ② 국제 학술대회 개최의 만점은 5점으로 하되, 최근 3년간 각 년도의 점수를 산정하고 그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다.
 - ③ 국제 학술대회 개최 점수는 제7조의 학술대회 및 제8조의 소규모 학술활동에 중

복하여 인정한다.

- ④ 국제 학술대회 증빙서류는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심의위원회 승인 및 결과보고 관련 서류 일체, 학술대회 초록집, 광고 포스터 및 관련사진 등으로 한다.

제 3 장 학 회 지

제13조(학회지 발간 평가) 학회지 발간 평가의 만점은 학회지를 발간하는 경우에는 40점, 세부학회로서 학회지를 발간하지 않고 논문을 게재하여 갈음하는 경우 35점으로 한다.

제14조(학회지 연간 발간횟수)

- ① 학회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매 호 2편 이상의 원저, 종설 또는 증례보고 게재(2편 미만일 경우 해당 호는 평가에서 제외함)
 2. ISSN 번호 보유
 3. 편집위원회 구성
 4. 치의학 학술지로서 적절한 투고규정, 게재논문심사제도와 투고방법 공개 및 준수
 5. 학회지 구독방법 공개
- ② 타 인준학회 또는 (가칭)학회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학술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연간 학회지 발간횟수의 만점은 25점으로 하되, 최근 3년간 각 년도의 점수를 산정하고 그 중 최저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가 0점일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 없이 인준불가로 조치한다.
- ④ 각 년도 학회지 발간횟수의 평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0점: 0회 발간
 2. 10점: 1회 발간
 3. 15점: 2회 발간

4. 20점: 3회 발간 또는 3회 미만이면서 연 10편 이상의 원저와 종설 또는 증례보고가 게재된 경우

5. 25점: 4회 이상 발간 또는 4회 미만이면서 연 20편 이상의 원저와 종설 또는 증례보고가 게재된 경우

⑤ 학회지 발간의 증빙서류는 최근 3년간 발간된 학회지 각 1부로 한다.

⑥ 온라인 학회지만 발간하는 경우에는 게재 사이트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15조(학회지를 발간하지 않는 세부학회의 논문게재) ① 학회지를 발간하지 않는 세부학회의 경우, 대한치의학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또는 관련 기간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② 논문게재 점수를 획득하려면 논문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본 논문은 OO학회의 학술활동의 결과임'의 형식으로 세부학회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③ 논문게재 점수는 최근 3년의 게재편수를 평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1. 5점: 연 1편 이상 2편 이하

2. 10점: 연 3편 이상 4편 이하

3. 15점: 연 5편 이상 8편 이하

4. 20점: 연 9편 이상 11편 이하

5. 25점: 연 12편 이상 14편 이하

6. 30점: 연 15편 이상 17편 이하

5. 35점: 연 18편 이상

④ 논문게재의 증빙서류는 최근 3년간 게재논문이 실린 학회지의 목차, 판권기 및 논문 첫 페이지 사본으로 한다.

⑤ 온라인 학회지만 발간하는 경우에는 게재 사이트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게재논문 심사제도 시행) ① 게재논문 심사제도를 시행할 경우 5점을 부여

한다.

② KCI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와 SCIE 등재학술지의 경우는 게재논문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게재논문 심사제도 시행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의 투고된 논문 대장 또는 엑셀파일

2. 신청 직전 년도의 제1호에 게재되었던 맨 처음 논문과 맨 마지막 논문의 심사 증빙자료: 심사위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심사결과지 사본, 온라인 시스템으로 심사하는 경우 온라인 투고사이트 주소 및 심사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메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메일 송수신 화면 등으로 한다.

제17조(KCI 또는 SCIE급 등재) 평가 시점의 KCI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및 SCIE 등재학술지는 5점을 부여한다.

제18조(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 준용) ①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 5점을 부여한다.

② 학술지의 모든 논문을 영문으로 발간하는 학회지는 5점을 부여한다.

③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 준용의 증빙서류는 투고규정 중 치의학용어집 준용 부분의 캡처본으로 한다.

제 4 장 학 회 운 영

제19조(학회운영 평가) 학회운영 평가의 만점은 10점으로 한다.

제20조(자체 홈페이지 운영) ① 학회 자체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5점을 부여한다.

② 학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학회소개 또는 개요

2. 학회 조직
 3. 학회 연락처
 4. 학회 정관 또는 회칙
 5. 학회지: 연결 링크만 있어도 인정함
 6. 학회활동 관련 내용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홈페이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게시판 또는 카페
 2.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3. 기업 등 상업목적으로 개설된 기업 홈페이지 상에 구축하거나 기업홈페이지 URL을 활용하여 구축한 홈페이지
 4. 기간학회 또는 융합학회가 다른 학회와 공동의 URL을 사용하는 경우
- ④ 세부학회가 관련 기간학회의 홈페이지 URL을 이용한 하위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⑤ 학술단체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홈페이지를 활용할 경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⑥ 자체 홈페이지 운영의 증빙은 홈페이지의 URL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소식지 등 발간) ① 소식지 발간 점수는 5점을 부여하되, 최근 3년간 각 년도의 점수를 산정하고 그 중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 ②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발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발행년월일
 2. 발행호
 3. 발행인
 4. 발행(가칭)학회명
- ③ 이메일이나 SNS 등을 이용한 회원간 정보 공유는 소식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소식지 등 발간의 증빙서류는 최근 3년 동안 발간된 소식지 각 1부로 하고, 온라인으로 발간하는 소식지의 경우에는 관련 화면의 캡처본으로 한다.

학회 인준 신청서

학회명		신청 구분	1. 기간학회 () 2. 세부학회 () 3. 융합학회 () ※ 1개만 체크 표시	
회원수		최근 3년 자료제출기준	2019.05.01. ~ 2022.04.30	
사무실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사무실)	
	직위		긴급 연락처(핸드폰)	
	e-mail			

2022. 8. 31.

우편발송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국

1. 학회의 역사적 배경 및 경위

1. 전신이 있었다면 그 명칭과 존속기간
2. 설립 취지문, 창립총회 회의록(학회 창립년월일)
3. 설립 후의 활동 경과

2. 회원의 구성 및 신상명세서 전산기록

1. 회원명단(기입 및 USB제출)

: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소속, 전공과목, 연락처, e-mail 등 기입

예)

연번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전공과목	연락처	이메일

2. 현 임원 명단(기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전공과목	연락처	이메일	기간학회 가입여부*

* 세부학회 인준신청일 경우 기입

3. 학회 회원의 입회 자격

3. 학회로서의 독자성, 필요성(자유롭게 기재)

1. 회원학회로서 귀 학회의 역할
2. 회원학회의 특정 분과학회로 보여지는 경우 독립되어야 하는 당위성
3. 회원학회 중 유사한 명칭이 있다면 그 학회와의 상이점
4. 회원학회 중 유관한 학회가 있다면 그 학회와의 상이점
5. 회원학회 중 학술 활동 또는 학술 내용에 있어 관련이 깊은 학회

4. 국내 학술활동(최근 3년 동안)

1. 총회 : 개최일, 참가자 수
2. 학술대회 : 개최일, 참가자 수, 발표연제수(포스터 포함), 발표논문 심사제도
(자체 평가표에 별도 기재)
3. 그 밖의 학술 모임 : 개최일, 참가자 수(자체평가표에 별도 기재)
4. 연구비 지급제도, 학술상 또는 우수논문 포상제도(자체평가표에 별도 기재)

5. 국제 학술활동(최근 3년동안)

1. 국제학회 개최경험 유무 : 학회 주최, 회원 개인 주최(자체평가표에 별도 기재)
2. 외국학자 초청 강의 : 일시, 장소, 초청자 명단, 강의 제목(자체평가표에 별도 기재)
3. 국제학회와의 관련 유무 : 지부 등
4. 학회 단독 또는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국제기관지 편집 발행 유무

6. 학회지 발간

1. 학회지 명:
2. 학회지 등재 현황: (한국연구재단, SCIE, 코리아메드 등재 등)
3. 주된 배포처 :
4. 게재논문 심사위원 수 :
5. 발행횟수 :

기타 상세 내역은 자체평가표에 기재

7. 학회 운영 상황

1. 최근 3년동안의 결산보고서 등 재무 개요
2. 최근 3년동안의 집행부 구성 현황

8. 회칙(재정 및 개정일자 명시)

--

[학회활동평가기준](기간학회, 융합학회 용)

평가항목	점수배점	항목별 배점	자체 평가 점수
I. 학술활동(50점)			
1. 학술대회*	2회 이상(15점) 1회(10점) 무(0점)	15	
2. 소규모 학술행사*	1 회 개최 시 기본 5점 1 회 추가당 3점 (10점)	10	
3. 연구비지급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4. 학술상 또는 우수논문포상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5. 국제 초청 강의 활동	1회(5점) 2회 이상(10점)	10	
6. 국제 학술대회 개최	1회 이상(5점) 없음(0점)	5	
II. 학회지 발간(40점)			
7.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	연 4회 이상 또는 연 4회 미만이나 연 20편 이상 게재 (25점) / 연 3회 또는 연 3회 미만이나 연 10편 이상 게재 (20점) / 연 2회(15점) / 연1회(10점)	25	
8. 게재논문심사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9. 한국연구재단 KCI 및 SCIE급 등재	예(5점) 아니오(0점)	5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치의학용어집 준용	예(5점) 아니오(0점)	5	
III. 학회 운영(10점)			
11. 홈페이지 운영	예(5점) 아니오(0점)	5	
12. 소식지 발간*	1회 이상(5점) 없음(0점)	5	
12개 항목		100	

※ 총 평점 60점미만일 경우 탈락조치

※ 1번, 7번 하나라도 0점일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조치

※ * 표기된 항목은 최근 3년에 대한 항목당 최저 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 2019년 10점, 2020년 5점, 2021년 10점일 경우 5점으로 인정

[학회활동평가기준](세부학회용)

평가항목	점수배점	항목별 배점	자체 평가 점수
I. 학술활동(50점)			
1. 학술대회*	2회 이상(15점) / 1회(10점) / 무(0점)	15	
2. 소규모 학술행사*	1 회 개최 시 기본 5점 1 회 추가당 3점 (최대 10점)	10	
3. 연구비지급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4. 우수논문포상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5. 국제 초청 강의 활동	2회 이상(10점) 1회(5점)	10	
6. 국제 학술대회 개최	1회 이상(5점) 없음(0점)	5	
II-1. 학회지 발간의 경우(40점)			
7.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	연 4회 이상 또는 연 4회 미만이나 연 20편 이상 게재 (25점) / 연 3회 또는 연 3회 미만이나 연 10편 이상 게재 (20점) / 연 2회(15점) / 연 1회(10점)	25	
8. 게재논문심사제도*	있다(5점) 없다(0점)	5	
9. 한국연구재단 KCI 또는 SCIE급 등재	예(5점) 아니오(0점)	5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치의학용어집 준용	예(5점) 아니오(0점)	5	
II-2. 타 학회지에 논문게재 하는 경우(35점)			
7. 논문게재 수	연 18편 이상(35점) 연 15~17편(30점) 연 12~14편(25점) 연 9~11편(20점) 연 5~8편(15점) 연 3~4편(10점) 연 1~2편(5점)	35	
III 학회 운영(10점)			
11. 홈페이지 운영	예(5점) 아니오(0점)	5	
12. 소식지 발간*	1회 이상(5점) 없음(0점)	5	
12개 항목(또는 9개 항목)		100 (또는 95)	
<p>※II-1 또는 II-2 중, 한 항목만 선택하여 기입함. II-2를 선택하여 작성했을 경우, II-1보다 점수가 5점 낮음. ※ 총 평점 60점미만일 경우 탈락조치 ※ 1번, 7번 하나라도 0점일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조치 ※ * 표기된 항목은 최근 3년에 대한 항목당 최저 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 2019년 10점, 2020년 5점, 2021년 10점일 경우 5점으로 인정</p>			

I. 학술활동(50점)

1. 학술대회(세칙 제7조) : 15점 중 ()점

○ 학술대회 횟수

구분	개최 횟수	학술대회 명	개최장소	참가자 수	발표연제
2019년	0회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			
2020년	0회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			
2021년	0회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			

※ 증빙서류 1 : 세칙 제7조 참조

2. 소규모 학술행사(세칙 제8조) : 10점 중 ()점

○ 소규모 학술행사 개최 횟수

구분	개최 횟수	행사명	장소	참가자 수
2019년	0회	2017년도 학술 워크샵		
		제1차 학술집담회		
			
2020년	0회	2018년도 학술 워크샵		
		제1차 학술집담회		
		...		
2021년	0회	2019년도 학술 워크샵		
		제1차 학술집담회		
		...		

※ 증빙서류 2 : 세칙 제8조 참조

3. 연구비 지급제도(세칙 제9조) : 5점 중 ()점

○ 연구비 지급내역

구분	지급자	지급내역	기간	연구비 지급 사유
2019년	홍길동	1,000,000	2017.05~2018.04	OOO 개선 연구
	김대한	5,000,000		교정연구

2020년	김학술			치의학 관련 책자 발간

2021년	김치과			치의학 관련 책자 발간

※ 증빙서류 3 : 세칙 제9조 참조

※ 지급내역에 따라 줄 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함.

4. 학술상 또는 우수 논문 포상제도(세칙 제10조) : 5점 중 ()점

○ 수상자 현황

구분	수상자	소속	수상내역	부상
2019년	홍길동	홍치과	학술대회 우수 포스터상	상장 및 상금
	김대한	한국대	학술지 우수논문상	
	...			
2020년	김학술	한국대	학술대회 우수 포스터상	상패
	...			
2021년	김치과	김치과	학술대회 최우수 포스터상	상패 및 상금
	...			

※ 증빙서류 4 : 세칙 제10조 참조

5. 국제 초청 강의 활동(세칙 제11조) : 10점 중 ()점

○ 국제 초청 강의 활동 횟수

구분	초청 횟수	행사명	초청자	소속	국적	발표연제
2019년	1회	춘계학술대회	Dr. David	NY Univ.	U.S.A	...
	
2020년	1회	추계학술대회	Dr. Chang	Qinghua Univ.	China	...
2021년	0회					

※ 증빙서류 5 : 세칙 제11조 참조

※ 초청횟수에 따라 줄 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함.

6. 국제 학술대회 개최(세칙 제12조) : 5점 중 ()점

○ 국제 학술대회 개최 현황

구분	초청 횟수	행사명	행사일자	개최장소
2019년	1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2017. 5.10	COEX
		...		
2020년	1회	세계 학술대회	2018. 1.15	김대중컨벤션센터
2021년	0회			

※ 증빙서류 6 : 세칙 제12조 참조

II. 학회지

7-1. 학회지 발간의 경우

학회지 연간 발간횟수(세칙 제14조) : 25점 중 ()점

○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구분	연간 발간횟수	권호	발행일
2019년	0회	00권 1호	2016년 3월 31일
		00권 2호	2016년 6월 30일
		...	2016년 9월 30일
			2016년 12월 31일
2020년	0회	00권 1호	2017년 3월 31일
		00권 2호	2017년 6월 30일
		...	2017년 9월 30일
			2017년 12월 31일
2021년	0회	00권 1호	2018년 3월 31일
		00권 2호	2018년 6월 30일
		...	2018년 9월 30일
			2018년 12월 31일

학회지 게재사이트	https://www.kda.or.kr/kda/kdaJournalOpen/kdaJournalOpenCont1/journal_list.kda
-----------	---

※ 증빙서류 7 : 세칙 제14조 참조

※ 해당 학회지의 발행횟수에 따라 줄 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함

※ 온라인만 발간하는 경우, 게재 사이트 적시

7-2. 학회지를 발간하지 않는 세부학회의 논문게재(세칙 제15조) :

35점 중 ()점. 연 평균()편

○ 연간 논문 게재횟수

구분	연간 게재횟수	학술지	권호	발행일
2019년	0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지	00권 1호	2016년 3월 31일
		대한치의학회지	00권 2호	2016년 6월 30일
		2016년 9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2020년	0회	...	00권 1호	2017년 3월 31일
		...	00권 2호	2017년 6월 30일
		2017년 9월 30일
		...		2017년 12월 31일
2021년	0회	...	00권 1호	2018년 3월 31일
		...	00권 2호	2018년 6월 30일
		2018년 9월 30일
		...		2018년 12월 31일

※ 증빙서류 7 : 세칙 제15조 참조

- ※ 게재 논문 수에 따라 줄 수 삭제 또는 추가하여 작성함
- ※ 온라인만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게재 사이트 적시

8. 게재논문 심사제도 시행(세칙 제16조) : 5점 중 ()점

▶ 심사서 증빙화면 부문

구분	첫 번째 논문
심사서 1	※ 심사서 건수에 맞춰서 표를 추가하여 작성 ※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삽입하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 크기 조정 가능
심사서 2	

구분	마지막 논문
심사서 1	※ 심사서 건수에 맞춰서 표를 추가하여 작성 ※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삽입하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 크기 조정 가능
심사서 2	

※ 증빙서류 8 : 세칙 제16조 참조

9. 한국연구재단 KCI 또는 SCIE급 등재(세칙 제17조) : 5점 중 ()점

▶ 등재일: 2018.01.01.~현재

10. 학회지 투고규정에 치의학용어집 준용(세칙 제18조) : 5점 중 ()점

○ 학회지 투고규정 중 치의학용어집 준용 여부 확인

※ 증빙서류 8 : 세칙 제18조 참조

Ⅲ 학회 운영(10점)

11. 자체 홈페이지 운영(세칙 제20조) : 5점 중 ()점

학회 홈페이지	www.kda.or.kr
---------	--

12. 소식지 등 발간(세칙 제21조) : 5점 중 ()점

○ 소식지 발간횟수

구분	연간 발간횟수	발행호	발행일
2019년	2회	2017년 1호	2017년 6월 30일
		2017년 2호	2017년 12월 30일
	
2020년	2회	2018년 1호	2018년 3월 31일
		2018년 2호	2018년 6월 30일
	
2021년	2회	2019년 1호	2019년 6월 30일
		2019년 2호	2019년 12월 30일
	

※ 증빙서류 9 : 세칙 제21조 참조